

대전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도시·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변경)
전략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2019. 11

제 1 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목적

- 바이오·ICT 등 첨단산업 중심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 정부의 제5차, 제7차 관계부처합동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에 따라 도심주변 첨단업종 및 유망서비스업종의 입지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 첨단업종 중심의 도시첨단산업단지 2차지구(6개지역)을 선정하여 지역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 개발을 발표함
- 금회 대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일원은 호남고속도로지선, 대전지하철1호선 등 광역교통여건이 양호하고 카이스트, 충남대 및 대덕연구단지와의 인접하여 창조경제 거점조성이 가능한 지역임
- 첨단산업의 경우 인력·기술이 풍부한 도시 인근 입지를 선호하나 도시첨단산업단지 면적은 전체 산업단지의 0.2%(2015년 기준)에 불과함에 따라, 접근성이 양호한 도시지역 개발제한구역내 첨단산업용지를 확보하고, 저렴한 신산업용지 확대를 통한 투자 촉진,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과 지역 혁신역량 확충이 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하고자 함

1.2 사업의 개요

1.2.1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대전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도시·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24-2 일원
- 면적 : 103,517㎡(개발제한구역 100%)
- 사업기간 : 2019년 ~ 2024년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 협의기관 : 환경부

1.2.2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의거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5호)」에 따라 작성함

1.2.3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및 산업단지계획

- 본 사업은 15만㎡ 미만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로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적용 대상 사업으로, 본 법률에 따라 인·허가 절차를 수행할 예정임
 -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및 산업단지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함

<표 1-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산업단지 지정)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나. 산업입지·산업단지 조성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별표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p>「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3조</p> <p>제23조(「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p> <p>①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검토 또는 평가하여야 한다.</p> <p>1.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이 1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p> <p>2.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p> <p>②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1회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협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

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 본 계획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가 수반되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관련[별표2]의 1. 개발기본계획 중 【가. 도시의 개발】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됨

〈표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개발제한구역 해제)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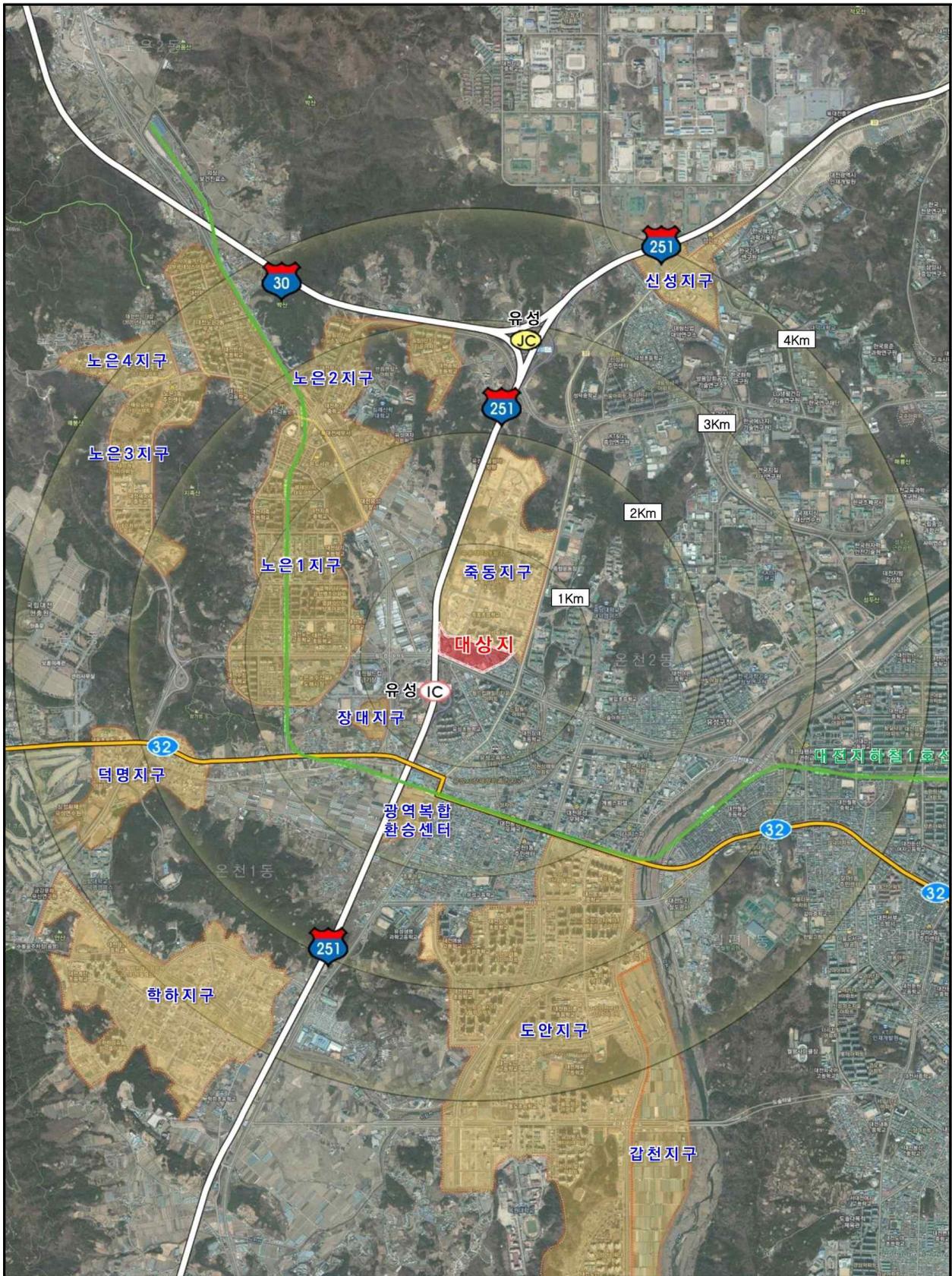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별표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방법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비고3 나목에 따라 하나의 계획이 다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통해 별표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협의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됨
- 따라서, 산업단지 지정 및 산업단지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평가항목을 포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할 것임

1.2.4 계획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2019. 10. : 전략환경영향평가준비서 제출·심의
- 2019. 12. : 산업단지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승인신청
- 2019. 12.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예정)
- 2019. 12.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공고 및 주민 등의 의견수렴(예정)



(그림 1-1) 계획지구 위치도

제2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수렴 개요

- 근거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 계획수립기관 : 국토교통부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총 9인(국토교통부, 환경부,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기간 : 2019. 10. 25 ~ 11. 08
- 결정사항 : 대상지역의 설정,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 ① 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제11조와 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3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민간전문가 외에 건강영향평가분야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사업계획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1.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토지이용구상안/ 3.대안/ 4.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②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2.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수렴 개요

2.2.1 대상지역 설정

- 본 사업계획의 수립과 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을 고려한 평가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함
-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매뉴얼(2017. 12,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2013. 1. 1,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 등을 참고하여 본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하였음
- 금회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도시·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포함)를 실시함에 따라 대상지역 설정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음

〈표 2-1〉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구 분		평가대상지역 설정 기준 및 사유	대상지역 범위	비 고
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입지의 타당성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를 포함한 조사지역의 현지조사 결과 사업시행으로 인해 동·식물상 생활사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주변 호남고속도로, 한밭대로, 유성대로, 대덕연구개발특구, 죽동지구, 노은지구 등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상: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00m 이내 • 동물상: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300m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 운영시
	지형 및 생태축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흩쌓기 및 흩깔기 발생으로 지형변화 지역 • 표고 및 경사 분석에 따른 입지 검토 지역 • 강우시 토사유출 및 비옥토 유실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수립에 따른 경관 변화 발생 지역 (토지이용변화 및 공동주택, 건축물 입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
	수환경의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 발생 및 투입인원으로 인한 오수 발생시 유입 가능 수계 • 운영시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수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 및 주변 수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 운영시

주)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조사범위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5호)에 제시된 영향범위 및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식물상 100m, 동물상 300m로 설정함

<표 2-1>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 계속

구 분		평가대상지역 설정 기준 및 사유	대상지역 범위	비 고	
입 지 의 타 당 성	생 활 환 경 의 안 전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 -계획지구가 위치한 지역의 기상현황 파악 -계획 수립에 따른 국지적 기상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인근 기상관측소	• 공사시 • 운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질(악취, 위생·공중보건 포함) -공사시 토사이동 및 장비투입에 따른 대기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계획지구의 위치적 특성상 500m 이내에 기존 주거지 등 주요 정온시설이 위치함 -운영시 산업단지 운영에 따른 주변 주거지역에 대한 대기질, 악취, 위생·공중보건 영향예상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0km 이내	• 공사시 • 운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진동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으로 소음·진동 영향 예상지역 -계획지구의 위치적 특성상 300m 이내에 기존 주거지 등 주요 정온시설과 기존 소음 발생시설인 호남고속도로, 한밭대로, 유성대로 등이 위치 -운영시 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 발생 영향 예상지역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300m 이내	• 공사시 • 운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양 -공사시 장비투입에 따른 폐유 발생 및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한 토양오염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 공사시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계획지구 주변 환경기초시설 연계처리 적정성 검토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공사시 • 운영시	
	자원·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건설폐기물, 분뇨 등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 공사시 • 운영시
		온실가스	• 건설장비 투입 및 토지이용변화, 난방 등 연료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예상 지역	• 계획지구	• 공사시 • 운영시
	사회 · 경제 환경과 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계획 및 주변 계획을 반영한 계획 수립 • 계획 수립에 따른 효율적 토지이용 계획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운영시
		인구 및 주거	• 계획 수립에 따른 인구 및 주거 변화에 따른 영향 지역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운영시
		산 업	• 계획 수립에 따른 산업 변화에 따른 영향 지역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운영시

2.2.2 대안의 설정

가. 대안의 종류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의 “대안”이란 대상계획의 목표와 방향, 환경적 목표와 기준,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입지 등 조건이 다른 여러 가지 안을 말함
- 대안의 설정은 계획의 특성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환경부, 2017.12」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별표4]에 제시한 “대안의 종류와 선정방법”을 참조하였음
- 본 계획은 대전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및 산업단지계획을 목적으로 하는 바, 본 계획의 경우 계획을 수립할 경우(Action)와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No Action)에 대한 “계획비교” 측면에서의 대안, 계획을 수립할 경우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수요·공급” 측면에서의 대안을 설정하여 각 대안별 비교·평가를 제시하였음

〈표 2-2〉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대안 종류	선정방법	계획지구
계획 비교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적용
수단·방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
수요·공급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적용
입지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
시기·순서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 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기타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

자료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나. 대안의 비교·분석

1) 계획 비교(Action, No Action)

○ 개발기본계획 수립(Action) 및 미수립(No Action)에 따른 대안별 환경적인 영향을 비교·분석하였으며,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별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2-3> 계획비교(Action, No Action)

구 분	대안 1	대안 2
	개발기본계획 수립(Action)	개발기본계획 미수립(No Action)
토지이용 측면	·계획적인 개발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기여하며, 투자촉진,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토지이용계획상의 변화 없음
각종 보호지에 미치는 영향	·각종 환경관련 보호지역에 저촉하지 않음	·각종 환경관련 보호지역에 저촉하지 않음
생태계 훼손 가능성	·공원 및 녹지계획으로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계획지구 주변지역은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개발압력이 높아 개별적인 개발에 따른 생태계 훼손 가능성 상존
지형의 훼손에 미치는 영향	·공사시 절·성토로 인한 불가피한 지형 변화가 예상되나, 저감대책 수립으로 훼손 최소화	·지형의 변화가 없으므로 지형의 훼손에 미치는 영향없음
쾌적한 생활환경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첨단업종 유치로 주변 정온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생활환경의 변화없음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계획시행에 따른 자연경관의 변화가 다소 예상되나, 적정개발계획의 수립으로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사업시행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없음
환경기준의 유지 및 달성에 미치는 영향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영향이 예상되나, 각종 저감대책을 강구하여 환경기준의 유지 및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	·환경기준 유지에 미치는 영향 없음

2) 수요·공급에 따른 대안별 검토

○ 수요·공급에 따른 대안별 검토를 위하여 토지이용계획 구상(안)에 대한 3개의 대안을 비교·분석하였음

〈표 2-4〉 토지이용구상(안) 비교

구분	대안1				대안2				대안3			
	구분	면적(m ²)	구성비(%)	비고	구분	면적(m ²)	구성비(%)	비고	구분	면적(m ²)	구성비(%)	비고
토 지 이 용 계 획	합 계	103,517	100.0		합 계	103,517	100.0		합 계	105,108	100.0	
	산업용지	25,654	24.8		산업용지	22,973	22.2		산업용지	32,792	31.2	
	복합용지	20,108	19.4		복합용지	20,710	20.0		복합용지	3,000	2.9	
	상업용지	3,873	3.7		상업용지	6,617	6.4		주거용지	12,000	11.4	
	지원시설용지	1,446	1.4		준주거용지	4,987	4.8		상업용지	4,000	3.8	
	준주거용지	4,002	3.9		공공시설용지	48,230	46.6		지원시설용지	2,150	2.0	
	주유소용지	1,925	1.9		-	-	-		준주거용지	4,037	3.8	
	공공시설용지	46,509	44.9		-	-	-		공공시설용지	47,129	44.8	
	특 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성을 고려한 간선도로변 산업기능 배치 • 산업단지 종사자 이용을 고려한 중심부 상업 지원기능 배치 • 첨단산업, 연구 개발 기능을 고려한 복합용지 계획 • 산업기능과 동측 대학마을 이격 및 완화기능을 고려한 준주거용지, 공원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종사자의 이용권을 고려한 상업 및 준주거시설 중심부 배치 • 첨단산업, 연구 개발 기능을 고려한 복합용지 계획 • 동측 대학마을 이격 및 하천을 고려한 공원 배치 • 기존 주유소 폐지로 정형화된 용지 공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성을 고려한 간선도로변 산업기능 배치 • 산업단지 종사자 및 공공성을 고려한 공공주택 배치 • 기존 주유소 폐지로 정형화된 용지 공급 가능 • 산업기능과 동측 대학마을 이격 및 완화기능을 고려한 공원, 준주거용지 배치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운영 중인 주유소 존치로 부지정형화 약화 및 인접 용지 용도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측 대학마을방면 복합용지 배치로 인한 민원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주택 배치로 인한 인근 대학마을 민원 발생 			

2.2.3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1) 평가항목의 선정

-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한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항목을 설정하였음

〈표 2-5〉 평가항목 설정

평가항목		선정사유	비고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계획의 비교 측면에서 대안 비교·검토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동·식물상 영향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계획지구의 지형변화 및 주변지역과 연계되는 생태축 변화 등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보전지역 분포여부	
		수환경의 보전	• 계획시행으로 발생하는 토사유출, 오수 및 비점오염물질의 주변 수계 영향 등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 기상 -계획 수립에 따른 국지적 기상 영향이 예상 되는 지역	
			• 대기질(악취, 위생·공중보건 포함) -토공사와 연료사용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으로 인한 영향예상 -계획지구 주변 악취유발물질, 산업단지 등 입지에 따른 대기질, 악취, 위생·공중보건 영향예상	
			• 소음·진동 -계획지구 주변환경을 고려한 소음·진동 현황 파악 -계획시행에 의한 건설장비 가동, 교통량 증가로 발생하는 영향 등	
			• 토양 -계획시행으로 공사시 폐유발생, 지장물철거 등에 의한 토양오염 예상 등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계획시행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오수, 폐기물 등의 처리 • 환경기초시설의 연계처리 여부 등	
		자원·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계획시행으로 분뇨 및 임목폐기물, 생활폐기물 등의 발생에 따른 영향
	온실가스		• 계획시행에 따른 공사시 건설장비 투입, 토지 이용변화, 운영시 난방 등 연료사용에 의한 온실 가스 발생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계획수립에 따른 토지이용의 변화 예상	
인구 및 주거		• 계획수립 시 인구 및 주거 변화에 따른 영향		

2)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 개발기본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선정된 평가항목별 현황조사, 영향 예측의 범위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표 2-6〉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평가항목		평가범위		평가방법		
계획의 적정성		• 계획지구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계획의 비교측면에서 설정된 대안을 환경적 측면에서 비교·분석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계획수립 범위를 고려하여 보전하여야 할 동·식물 현황 및 서식환경을 파악하고 생태계 영향을 예측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계획내용을 토대로 지형변화 및 생태축 변화 여부 검토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계획내용을 토대로 경관변화를 가시권 검토 등을 통해 평가	
		수환경의 보전		• 계획지구 및 주변 하천(반석천) • 현황조사 - 하천수 4지점 - 지하수 2지점	• 시설계획에 따른 토사유출량 및 발생오수 영향예측 • 시설운영에 따른 오수발생량, 비점오염원 발생 부하량 산정, 평가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상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계획지구 주변기상대 최근 10년 기상자료 분석 및 영향 검토	
			대기질(악취, 위생·공중보건 포함)	• 경계로부터 1.0km 이내 • 현황조사 : 4지점	• 계획내용을 토대로 공사시 및 운영시 대기 오염 발생 및 영향을 예측하여 대기 환경기준과 비교 평가	
			토양	• 계획지구 • 현황조사 : 3지점	• 계획시행시 폐유발생, 지장물철거 등에 의한 토양오염 영향예측	
			소음·진동	• 경계로부터 0.3km 이내 • 현황조사 : 5지점	• 계획내용을 토대로 공사시 소음·진동, 운영시 소음영향을 예측하고, 환경기준 등과 비교 평가	
	입지의 타당성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계획시행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환경기초 시설 연계 처리 방안 검토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자원순환	• 계획지구	• 폐기물발생량 산정 및 폐기물 처리정책을 고려한 자원활용과 에너지 순환성 검토
온실가스				• 계획지구	• 계획지구내 공동주택 및 기타 건축물의 연료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영향예측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계획지구	• 주변 현황 및 지형 등 여건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여부 검토	
		인구 및 주거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계획수립에 따른 인구 및 주거변화	
		산업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산업변화에 따른 영향검토	

2.2.4 환경현황 조사계획

가. 조사목적

- 계획수립에 따른 환경질 조사는 계획지구 주변지역의 환경현황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계획시행에 따른 공사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음
- 한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및 의견수렴 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조사계획은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할 것임

나. 조사지점

- 환경질 조사 지점은 사업계획 분석 및 현장조사를 통해 계획지구의 주변 환경, 수계, 정온시설 등 영향예상지역 및 대표성을 고려하여 선정함
 - 조사지점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대기질, 악취, 지표수질, 지하수질, 토양, 소음·진동이며,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음

〈표 2-7〉 조사항목 및 지점

구 분	조 사 항 목	조사지점	항목수
대 기 질	PM-10, PM-2.5, SO ₂ , NO ₂ , CO, O ₃ , Pb, 벤젠	4지점(3일)	8개
지표수질	pH, BOD, SS, DO, 총대장균군, Cd, As, CN, Hg, 유기인, Pb, Cr ⁶⁺ , PCB, ABS, COD, T-P	4지점	16개
지하수질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Pb, Hg, As, Cr ⁶⁺ , NH ₃ -N, NO ₂ -N, Cd, Al, 페놀, KMnO ₄ 소비량, 총경도, 맛, 냄새, Cu, 색도, pH, Zn, 염소이온, 증발잔류물, Fe, Mn, 탁도, 황산이온	2지점	25개
토 양	Cd, Cu, As, Hg, Pb, Cr ⁶⁺ , Zn, Ni, F, 유기인화합물, PCB, CN, 페놀,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1,2-디클로로에탄, 벤조(a)피렌	3지점	22개
소음·진동	소음 및 진동	5지점	2개

〈표 2-8〉 조사지점별 위치

구 분		환경질 조사지점	비 고
대기질	A-1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 689(대전죽동초등학교)	
	A-2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220(충남대 자연과학대학 기초2호관)	
	A-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155(유성초등학교)	
	A-4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 524(대전노은중학교)	
하천 수질	W-1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 234-8	반석천
	W-2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 552-32(죽동천교)	반석천
	W-3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 552-18(궁동교)	반석천
	W-4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378(보행교)	반석천
지하 수질	GW-1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 689(대전죽동초등학교)	
	GW-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20-5	
토양	S-1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109-8	계획지구
	S-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16-1	계획지구
	S-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25-1	계획지구
소음· 진동	NV-1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 10-2(호남고속도로)	도로
	NV-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245-46	도로
	NV-3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 690(죽동로)	도로
	NV-4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37-2(한밭대로)	도로
	NV-5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 686	일반

※환경질측정지점은 현장여건(전기활용, 측정거부 등)에 따라 인접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음

2.2.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의견수렴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동법 시행령 제7조(합동설명회등의 개최) 등의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임

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공람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에 의거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시행할 것임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 :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 1회 이상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실시사실 게시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관할 시·군·구 정보통신망 또는 개발기본계획 수립 행정기관(국토교통부) 정보통신망
 - : 공고·공람 내용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
 - : 공고·공람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
 - 공람장소 : 대전광역시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비치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나. 합동설명회 개최

- 합동설명회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람기간 내에 실시하며, 설명회 일시, 장소 등은 평가대상지역 관할 지자체와 협의·결정하고,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는 공람 공고 시 개최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토록 할 것임

다. 설명회 생략

- 합동설명회등이 사업시행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할 경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거 그 사유를 하나 이상의 중앙 일간신문 및 해당 지역 지방 일간신문과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주민에게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한 경우에는 합동설명회등을 개최한 것으로 함